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4. 2. 20(화) 10:00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62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2. 2.
- 라.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736,796,866천원(일반 711,333,570천원 특별 25,463,29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1회추경 (안)	비 고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736,796,866	735,718,162	734,975,982	742,180	1,078,704	
일 반 회 계		711,333,570	710,254,866	709,512,686	742,180	1,078,704	
특 별 회 계		25,463,296	25,463,296	25,463,296	0	0	
	의료급여기금	585,000	585,000	585,000			
	주 차 장	24,878,296	24,878,296	24,878,296			

4. 푸른미래도시국 추경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푸 른 미 래 도 시 국		21,228,486	20,576,386	652,100	3.17 %
주	택 과	1,514,842	1,514,842	0	0.00 %
도	시 계 획 과	292,565	292,565	0	0.00 %
주	거 정 비 과	2,374,109	1,722,009	652,100	37.87 %
공	원 녹 지 과	16,575,290	16,575,290	0	0.00 %
건	축 과	471,680	471,680	0	0.00 %

5.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제1회추경(안) ②
주거정비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에 따른 추가 용역	1,347,100	695,000	652,100
민간재개발 대상지 조합설립 지원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공공지원을 통한 조합 설립 (시비 감추경 구비 편성)	379,200	379,200	0

6. 검토 의견

- 푸른미래도시국은 기정예산(205억 7,638만원)에서
금회 6억 5,210만원이 증액된 212억 2,848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2.88%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가. 주거정비과

기정예산(17억 2,200만원)에서 금회 6억 5,210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내용으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따른 추가 용역

6억 5,210만원 증액

민간재개발 대상지 조합 설립 지원이 시비에서 구비로 자원 변경

○ 푸른미래도시국의 추경안은 당초 추진되는 사업 외 추가 발생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새로이 편성되었다고 보며 사업 특성에 따른 즉각적인 자원 투입과 실효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334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